

##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

-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중심으로 -

---

---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 I. 서론
  - II. 사외이사
  - III. 감사
  - IV. 결론
-

■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는 2019 년과 2020 년 전체 이사의 약 49%를 사외이사로 선임

- 이는 상법 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 25%를 크게 상회하며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과반수 기준에 가까움
- 사외이사 독립성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2006 년 사외이사 비중은 43%였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해왔음

■ 사외이사의 직업군은 과거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을 중심으로 재계 사외이사가 30% 이상 차지했으나, 현재 교수 등 학계 사외이사가 약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재계 사외이사는 20%까지 감소

■ 2020 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의 19.12%임

- 2006 년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 비중은 37%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 년 22.04%, 2020 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나타남
-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약 75%는 해당 회사나 계열사 임직원 출신이거나 거래관계로 인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례이며, 나머지 25%는 학연으로 인한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음

2015 년 이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 변동 (단위: %)

분류	세부분류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직접이해관계	계열사출신	5.06	6.40	7.65	7.17	6.23	7.52
	제휴/거래처	1.12	1.07	0.61	0.77	0.62	0.64
	소송대리등	6.41	7.70	7.29	6.91	4.86	4.46
	정부/채권단	0.56	0.36	0.12	0.13	0.5	0.76
	기타	1.12	0.95	0.36	0.13	0.12	0.13
	소계	14.29	16.47	16.04	15.11	12.33	13.5
학연		4.84	5.57	7.29	9.35	10.59	10.57
계		19.12	22.04	22.96	24.46	22.91	24.08

■ 한화와 두산그룹은 2018년까지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해왔으나 2019년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음

○ 한화그룹은 2018년 지배구조 개선 계획 발표 후 2년 동안 기존 10명 이상 재직 중이던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임기 만료 후 재선임하지 않았음. 2020년 현재 한화그룹 상장계열사에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없음

○ 두산그룹은 지배주주 및 계열사의 주요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해 왔으나, 2019년과 2020년 기존 김앤장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후 재선임하지 않음

■ 2020년 대기업집단의 67개 계열사가 감사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중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2020년 43%임

○ 이는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 19%보다 훨씬 높아 감사의 독립성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 줌. 특히 독립성이 문제되는 사외이사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해관계 있는 감사 비중은 2012년 이후 계속 40%를 상회하고 있음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약 75%가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일시적 거래관계나 간접적 이해관계보다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높음

■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법 등 사외이사 제도 관련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2020년 2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법무부가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21대 국회의원 다수가 독립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사외이사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하였으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에도 사외이사 제도 관련 방안이 포함됨

- 이미 발의된 내용 뿐 아니라 사외이사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함. 아울러 사외이사에 비해 법령상 자격요건을 제한하지 않는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

#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분석(2019~2020년)

##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중심으로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 1. 서론

회사 내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인물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되었다. 2011년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등 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월에는 사외이사의 계열사 재직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열사 총 재직기한을 9년으로 제한하는 등 시행령이 개정, 즉시 시행되었다.<sup>1</sup> 21대 국회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표결 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개정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제도 도입 후 20여

---

<sup>1</sup> 사외이사 제도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내역

1) 2009.1.30 상법 제382조의3 사외이사의 일반규정 및 제542조의8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규정 도입

2) 2011.4.14 사외이사 자격요건 일부 강화 – 집행임원의 가족 사외이사 결격사유 추가 등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일부 강화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사외이사 포함 등기임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 신설

3) 2020.1.19 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제1호 – 계열회사 상무 종사 제한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상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 상장회사 계열사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 9년으로 제한(단일 회사 6년 초과 금지)

년 동안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는데, 제도 강화와 완화를 주장하는 양쪽의 비판은 상이하다. 법령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 법령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이 느슨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외부 주주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비판에서 사외이사의 요건으로서 독립성의 중요성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례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외이사의 선임 현황 및 독립성을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 구체적, 실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7년에 2006년 대기업집단 상장회사 사외이사 전체의 독립성을 분석하는 보고서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분석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13년부터 감사의 독립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분석 보고서'와 별도로 2015년부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들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과 개별 사외이사들의 경력을 분석한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sup>2</sup>를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및 2020년 현재 대기업집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현황 및 독립성을 분석하여, 사외이사 제도가 입법 목표대로 경영자 및 대주주 견제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

<sup>2</sup>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의 사외이사 이해관계 유형은 본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이해관계 및 학연으로 나뉘지만 세부적인 이해관계 판단기준에 있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 2. 분석대상 및 방법

###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5월과 2020년 5월 각각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이다.

각 임원의 명단은 2019년 사업보고서와 2020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2019년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총 56개(소속 상장회사가 없는 3개 기업집단 제외), 2020년 분석대상 기업집단은 61개(소속 상장회사가 없는 3개 기업집단 제외)이다. 2019년 56개 기업집단의 상장계열사는 262개사이며, 등기임원은 1,734명이다. 이 중 사외이사는 844명이며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상근감사위원 포함) 817명, 상근 또는 비상근 감사는 73명이다. 2020년 61개 기업집단의 상장계열사 272개사의 등기임원은 1,827명이며 사외이사는 889명,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포함)는 861명, 감사는 77명이다.

<표1> 분석대상 현황

(단위: 개, 개사, 명)

	2020년	2019년
분석대상 기업집단수	61	56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수	272	262
총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수	1,827	1,734
사내이사	861	817
사외이사 (분석대상)	889	844
감사 (분석대상)	77	73
평균이사 수	6.72	6.62
평균 사내이사 수	3.17	3.12
평균 사외이사 수	3.27	3.22

본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배주주 또는 회사 및 경영진과 일정 수준 이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지배주주 또는 회사와의 관련성이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적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이상일 경우를 뜻하며, 특수한 거래관계 개별 사례를 넘어 사회통념 상 이미 지배주주 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관계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판단 기준은 과거 보고서와 동일하다.

## 2) 이해관계의 기준

이해관계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력이나 해당 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재직 중인 기관과 거래관계가 있는 등 직접적이고 명확한 이해관계 외에 ‘학연’ 등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간접적 이해관계를 포함한다. 학연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사외이사 등과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과 개연성을 명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아직 무시할 수 없는 네트워크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 외 ‘직접적 이해관계’는 <표2>와 같이 5가지로 세분한다.

<표2> 이해관계 분류 기준

직접적 이해관계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임직원 재직
	전략적 제휴 또는 영업거래관계
	법률대리 및 자문제공 또는 회계감사인 등 계약관계
	(민영화된 공기업 및 구조조정 기업에서) 정치권 낙하산 또는 채권금융기관 출신
	기타 직접적 이해관계
간접적 이해관계	학연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력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직업군에 종사했다라도 상당한 기간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근무했을 경우 이해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등으로 판단한다. 과거 보고서에서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이미 회사의 상근 임직원에 가깝게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로서 단일 회사 재직 6년, 계열사 전체 재직 기간 9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법령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계열사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총합 9년 이상인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분류한다.

‘법률대리인 또는 법률자문 제공’의 경우 법령 상으로 ‘주된 법률대리 또는 자문계약’이 아닌 이상 사외이사로서 결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으나,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외이사 등이 해당 회사에 직접 자문을 제공하거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최근 3년 내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에 법률자문 등을 지속하는 조직의 피고용인으로 소속된 사외이사 등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과거 ‘사외이사의 독립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배주주 등과의 고교 동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무조건 학연관계라고 판단하였으나, 최근 학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외이사 중심 연령층 저하로 인한 학연관계의 약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연도가 10년 이상 차이 나지 않는 고교 동문에 한해 학연 이해관계가 있다고 기준을 변경하였다. 대학 학연의 경우 동일학교 및 동일학과에서 유사한 기간 졸업한 연도를 기준으로 학연의 유무를 판단하였다.

<표3>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

범주	구체적인 사유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 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회사 및 동 기업집단 계열사 임직원으로 재직된 경력이 있는 경우</li> <li>■ 최근 20년 이내 계열분리가 이루어진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분리된 계열사 재직 경력이 있을 경우</li> </ul> <p>동 회사 및 동 기업집단 계열사 사외이사로서 10년 이상 재직된 경우</p>
전략적 제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회사 또는 계열사와 제휴 또는 기술공급계약, 영업관련 주요</li> </ul>

	계약을 맺은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 당해 회사와 거래하는 주요 매출/매입처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우호주주의 임직원
소송대리, 회계감사인 또는 법률자문 회사 출신	■ 최근 3년 내 종결된 회사 또는 지배주주 일가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소속 ■ 최근 3년 내 당해 회사 또는 계열사에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소속 ■ 최근 3년 내 종결된 소송에서 회사 상대방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소속 : 이해관계 상충 계열사 또는 지배주주 고문변호사인 경우
정부 또는 채권단	■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 정부 출신 현재 채권단 관리를 받는 기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 소속
학연관계	■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주주 일가 또는 해당 회사의 현직 사내이사 <sup>3</sup> 다음의 관계가 있는 경우 △ <u>최근 10년 내</u> 고교동문인 경우 △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유사한 입학/졸업년도(±1) <sup>4</sup>

### 3) 직업군 분류 기준

이해관계 유무는 사외이사 등의 독립성 판단 기준이며, 사외이사 등의 과거 경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직업군 기준은 전문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과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본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직업군을 8개로 대분류하고, 14개로 세분화하였다.

다수의 사외이사 등은 관료에서 학계, 법조계에서 재계 등 복수의 직업을 거쳤기 때문에 단일 직업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각 직업군에 대한 재직 시기와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가장 주요한 경력을 직업군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sup>3</sup> 지배주주 일가의 경우 해당 회사뿐 아니라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임직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하였다.

<sup>4</sup> 입학과 졸업연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생년으로 추정하였다.

기업인 중 20년 내 계열분리된 기업집단<sup>5</sup> 소속 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 등은 계열회사 출신으로 분류했으며, 경력 중 금융기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사외이사 등은 금융회사 기업인으로 분류하였다.

직업군 중 공무원은 회사 경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경제금융조세 공무원과 기타 부처 출신 공무원으로 구분하였다. 경제금융조세 공무원은 기획재정부(구 재무부 및 경제기획원, 재경원,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망라)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주로 근무한 공무원이며, 나머지 부처 경력이 우선시되는 공무원은 기타 부처 출신으로 분류하였다. 단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등은 다수의 정부부처를 거치게 되어 특정 부처 출신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으나,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재직 시기와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처를 기준으로 최종 분류하였다.

<표4> 직업군 분류 기준

직업군	직업군 세부 분류 기준
재계	계열회사 / 금융회사 / 일반회사
공무원	경제·금융·조세 공무원 / 기타부처 공무원
법조계	판검사 / 변호사
학계	교수 / 연구원
회계사 등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언론계	기자, 방송인
정계	국회의원 / 정당인
기타	공공기관 / 시민사회 등

#### 4) 분석의 한계

분석 대상 사외이사 등의 경력은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주주총회 공고 등

<sup>5</sup> 예를 들어 LG그룹과 GS그룹(2003년 계열분리), LS그룹(2004년 계열분리)는 계열회사로 분류, 1990년대 말 분리된 현대자동차그룹 및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등은 일반회사로 분류하였다.

공시 외에도 연합뉴스, 조인스닷컴 등의 인물정보와 기업 홈페이지 공개정보, 언론기사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객관적인 공시자료와 대중에 공개된 자료만을 토대로 작성되어 사외이사 및 감사와 회사 및 지배주주, 경영진 간의 알려지지 않은 이해관계는 파악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는 독립성이 없지만 외관상 이해관계가 없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본 보고서가 파악한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 및 감사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과 자료에서 파악한 최소치로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 회사 중에서도 자산규모가 큰 계열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상세하게 알려진 소위 명망가 사외이사 등이 많은 반면 소규모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은 이력이 회사의 공시 등으로 일부 외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규모가 작은 분석 대상 회사일수록 사외이사 및 감사의 이해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II. 사외이사

### 1. 이사회 내 선임현황

현행 상법 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이사회 내 1/4 이상(자산 1000억 미만

코스닥 등록 회사는 제외), 특례규정 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최소 3인 이상, 전체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2019년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262개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844명, 2020년 272개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889명으로 회사 당 평균 사외이사 수는 2019년 3.22명, 2020년 3.27명으로 2017년과 2018년 3.02명, 3.12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은 2019년과 2020년 48.67%, 48.66%로 경제개혁연구소가 사외이사 관련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2006년 사외이사 비율이 43.13%에 그쳤던 것에 비해 5%p 가까이 비중이 늘어났다. 즉 대기업집단 상장회사는 평균적으로 상법 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며, 특례 규정 기준에 가까울 정도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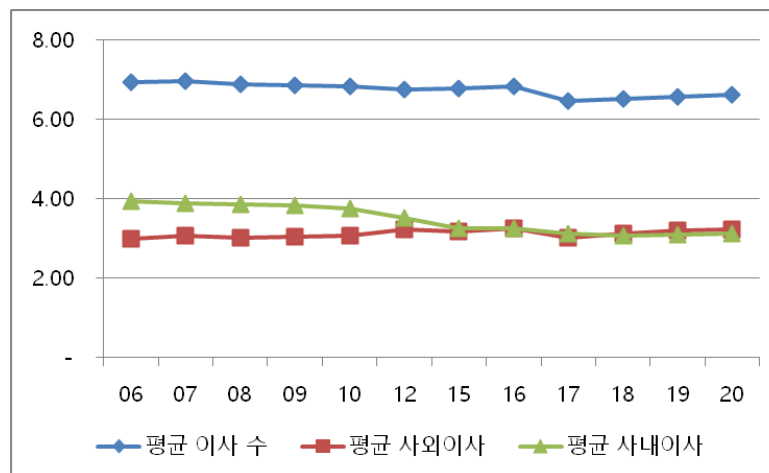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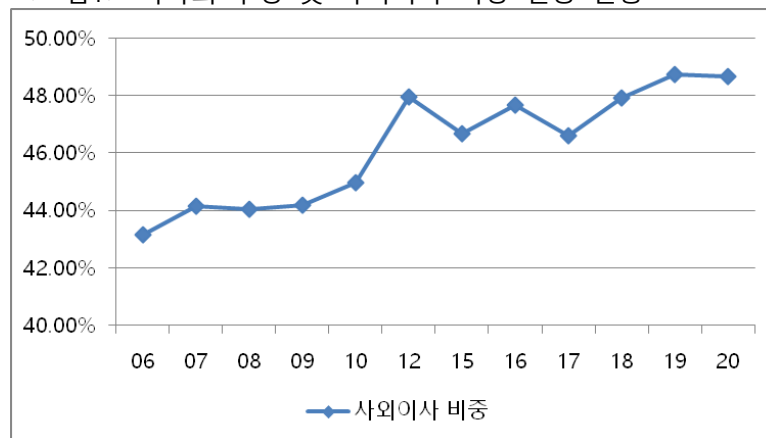
2019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75명, 2020년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는 219명으로 2017년 212명, 2018년 191명에 이어 매년 200명 내외 사외이사가 교체되고 있다. 2020년에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기간이 6년으로 제한되어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하는 회사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대기업집단 상장회사는 장기재직이 문제되는 이사가 전체 상장회사에 비해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5> 사외이사 선임 현황 변동 (단위 : 개사, 명)

이사현황/연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기업집단 수	58	53	55	53	53	48
상장회사 수	276	264	264	259	247	248
등기임원 총수	1,827	1,734	1,717	1,676	1,685	1,682
사내이사 수	861	817	813	807	807	808
사외이사 수	889	844	823	781	803	785
사외이사 비중	48.66%	48.67%	47.93%	46.60%	47.66%	46.67%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기업집단 수	62	67	69	79	62	59
상장회사 수	250	278	263	247	211	206
등기임원 총수	1,685	1,900	1,806	1,699	1,470	1,428
사내이사 수	877	1,046	1,008	951	821	812
사외이사 수	808	854	798	748	649	616
사외이사 비중	47.95%	44.95%	44.19%	44.03%	44.15%	43.13%

<그림1>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비중 변동 현황



## 2. 직업군 변동 현황

최근 10여 년 간 사외이사 직업군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재계 출신 사외이사가 전체 사외이사의 1/3을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20% 미만까지 감

소하였다. 재계 사외이사는 2020년에 다시 20%를 상회하였으나, 교수 등 학계 사외이사가 10여 년 전 27%에서 2020년 10%p 이상 증가한 것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하다. 즉 10년 동안 사외이사 직업군 관련 가장 뚜렷한 변동 경향은 재계 사외이사 비율의 감소와 학계 사외이사 비중의 증가이다. 학계, 재계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직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는 2006년 비중 1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사외이사의 1/4인 약 25%를 차지했으나, 2018년 이후 눈에 띄게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p 이상 비중이 낮아진 18.67%를 차지했는데, 이에 비해 학계 사외이사는 전년 대비 약 3%p 증가하였다. 실제 2019년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학계가 60명, 전직 공무원 출신이 39명임에 비해 2020년 학계 82명, 전직 공무원 35명으로 최근 2년 간 전직 공무원보다 학계 사외이사 선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직업군 변동 현황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기업경영을 직접 경험하여 이해가 깊은 재계 사외이사를 선호했으나 점차 전문가 중심의 학계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재계 사외이사 중 독립성이 문제가 되는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는 2019년 신규 사외이사 중 3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립성에 문제 없는 일반 회사 출신은 28명으로 최근 대기업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직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의 경우 대정부 로비 목적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될 위험 문제가 있음에도 최근까지 매년 비중이 증가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최근 2년 동안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향후 선임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회계사인 사외이사의 비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2~3% 내외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2018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20년 전체 사외이사의 4.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 상 자산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하는데, 2019년 회계·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회사가 다수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sup>6</sup> 이후 법무부는 회계전문가 감사위원 선임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2020년 상법 시행령 중 회계·재무 전문가 감사위원 선임 기준 중 불명확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였다. 금융감독원 역시 회계·재무 전문가 감사위원의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였다.

<표 6> 사외이사의 직업군 변동 현황 (단위:%)

직업군/연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재계	20.81	19.43	19.68	19.97	21.3	23.31
공무원	18.67	21.68	23.33	24.71	23.41	21.66
법조계	13.16	13.98	13.61	13.57	12.7	13.63
학계	37.23	34.60	34.39	33.55	32.38	31.21
회계사등	4.50	4.15	3.16	2.82	2.62	2.55
언론계	2.81	3.55	3.4	3.46	4.36	4.2
정계	0.79	0.59	0.73	0.26	1.49	1.78
기타	2.02	2.01	1.7	1.66	1.74	1.66
계	100.00	100.00	100	100	100	100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재계	24.01	29.74	27.82	29.68	31.12	33.11
공무원	24.01	20.96	18.55	20.05	19.57	18.83
법조계	15.22	12.88	14.29	13.24	14.33	13.31
학계	30.45	28.57	30.83	29.28	27.73	27.1
회계사등	2.23	2.69	3.13	2.67	1.85	2.27
언론계	2.6	2.81	2.76	2.41	2.47	2.92
정계	0.25	0.35	0.63	0.4	-	-
기타	1.24	1.99	2.01	2.27	2.93	2.4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sup>6</sup>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2019.7.25) 법무부에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미충족 회사에 대한 제재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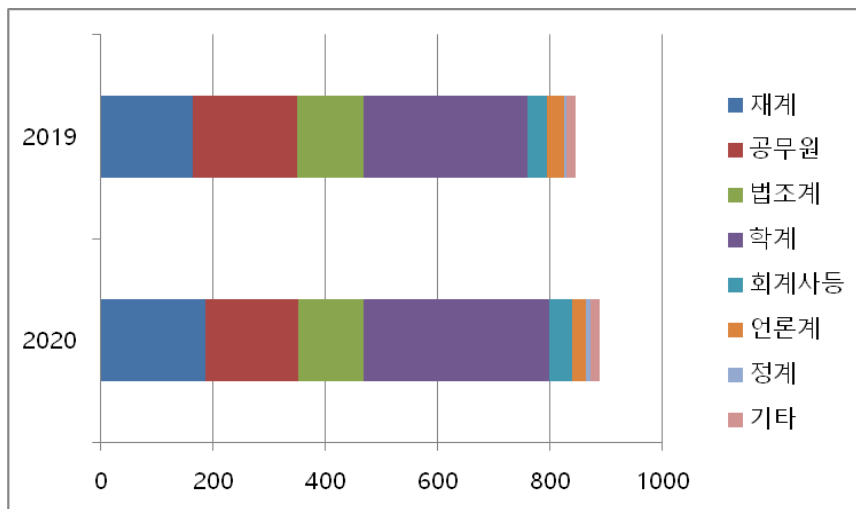


2019년과 2020년에 재선임이 아닌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175명, 219명으로 각각 전체 사외이사의 20.73%, 24.63%가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군은 학계 사외이사로 2019년 신규 사외이사의 34.29%, 2020년에는 37.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2019~2020년 사외이사 직업군 현황 (단위: 명, %)

직업군/연도	2020				2019			
	전체 사외이사	신규 사외이사	신규사외이사내 비중	전체사외이사내 신규비중	전체사외이사	신규사외이사	신규사외이사내 비중	전체사외이사내 신규비중
재계	185	59	26.94	6.64	164	31	17.71	3.67
공무원	166	35	15.98	3.94	183	39	22.29	4.62
법조계	117	23	10.50	2.59	118	25	14.29	2.96
학계	331	82	37.44	9.22	292	60	34.29	7.11
회계사등	40	12	5.48	1.35	35	9	5.14	1.07
언론계	25	3	1.37	0.34	30	6	3.43	0.71
정계	7	3	1.37	0.34	5	-	-	-
기타	18	2	0.91	0.22	17	5	2.86	0.59
계	889	219	100.00	24.63	844	175	100.00	20.73

<그림2> 2019~2020년 사외이사 직업군 현황



### 3. 직업군별 특징

#### 1) 학계 출신 사외이사

학계 출신 사외이사는 2009년부터 전체 사외이사 직업군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2019~2020년에 비중이 더 확대되었다. 학계 사외이사 중 약 96%가 대학교수로, 이 중 절반 정도 기업경영과 일차적으로 관련성이 깊은 경제·경영학과 및 관련학과 교수이다. 기타 전공자 교수의 경우 이공계, 의학, 미디어 등 각 회사 사업목적에 맞는 분야를 전공한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교수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비교적 겸직이 자유롭고 법령상 자격제한 요건이 많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이 선호하는 직군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수로서 학문적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기업경영 실무에 경험이나 이해가 없어 이사회에서 적절한 경영판단을 하거나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교수의 전공분야는 경제·경영학 내에서 조차 회계, 재무, 인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단순히 경제·경영학 교수는 모두 사외이사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세부전공이 겹치는 사외이사를 복수로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원 내 역할이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계 사외이사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현행 상법 상 사외이사 겸직은 2개사까지 가능한데, 비상근으로서 통상 매월~분기 당 1회 이사회 참석이 주된 업무이므로 교수 업무와 함께 2개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수 또한 적지 않아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5천 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학계 사외이사에 있어 사외이사는 업무 강도 이상 보수가 보장된 부업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표 8> 학계 사외이사 비중 변동 현황 (단위: %)

분류	세부분류	2020	2019	2018	2017
----	------	------	------	------	------

		학계내	전체내	학계내	전체내	학계내	전체내	학계내	전체내
교수	경제/경영	48.64	18.11	48.29	16.71	44.52	15.31	41.6	13.96
	기타전공	48.04	17.89	47.95	16.59	50.18	17.25	53.82	18.05
	소계	96.68	36.00	96.23	33.29	94.7	32.56	95.42	32.01
연구원		3.32	1.24	3.77	1.30	5.3	1.82	4.58	1.54
<b>계</b>		<b>100.00</b>	<b>37.23</b>	<b>100.00</b>	<b>34.60</b>	<b>100</b>	<b>34.39</b>	100	33.55

## 2)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고 퇴직 후에도 정책 형성과 이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사외이사로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보다 전관예우 관행을 통해 대정부 로비나 민원 해결을 기대하는 것으로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다수의 회사가 장관 등 최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의 선임 목적이 기업경영 감시와는 다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의 유관 부처를 세분화하면 경제금융조세 부처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외이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 공무원 사외이사의 약 70%를 차지한다. 기재부(구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이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을 망라) 출신으로 분류된 사외이사는 기재부 외에도 여러 관련 부처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력상 중심이 되는 부서는 기재부이다. 기재부 출신 사외이사는 2017년 경제금융조세 공무원 사외이사의 1/4 이상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21.08%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출신보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가 더 많았는데, 기업경영에서 세금 이슈가 무엇보다 주요한 현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대백화점 그룹은 각 계열사마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1명씩 선임하고 있다.

<표 9>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 비중 변동 현황 (단위: %)

분류	세부분류	2020		2019		2018		2017	
		관료내	전체내	관료내	전체내	관료내	전체내	관료내	전체내
경제금융조 세공무원	공정위	11.45	2.14	10.93	2.37	11.46	2.67	12.95	3.2
	국세청	21.69	4.05	22.40	4.86	25	5.83	25.91	6.4
	금융위등	10.24	1.91	10.93	2.37	9.38	2.19	8.29	2.05
	기재부등	21.08	3.94	20.22	4.38	23.96	5.59	25.91	6.4
	소계	<b>64.46</b>	<b>12.04</b>	<b>64.48</b>	<b>13.98</b>	<b>69.79</b>	<b>16.28</b>	<b>73.06</b>	<b>18.05</b>
기타공무원		35.54	6.64	35.52	7.70	30.21	7.05	26.94	6.66
계		100.00	18.67	100.00	21.68	100	23.33	100	24.71

### 3) 재계 출신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내 재계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 외 주목할 부분은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미 해당 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 또는 재직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경영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법령 상으로도 제한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법령에서 제한하는 최근 3년 이내가 아니더라도 장기간 계열사에 재직했던 임직원은 이미 그룹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외이사 선임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사가 계열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임직원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이러한 계열회사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2015년까지도 재계 사외이사 내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는데 2018년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sup>7</sup>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34조..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1.08%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금융회사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2020년 전체 재계 사외이사 대비 35.68%인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내 약 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재계 사외이사 비중 변동 현황 (단위: %)

분류	2020		2019		2018		2017	
	재계내	전체내	재계내	전체내	재계내	전체내	재계내	전체내
계열회사	21.08	4.39	25.61	4.98	29.01	5.71	26.92	5.38
금융회사	35.68	7.42	31.10	6.04	28.40	5.59	31.41	6.27
일반회사	43.24	9.00	43.29	8.41	42.59	8.38	41.67	8.32
계	100.00	20.81	100.00	19.43	100.00	19.68	100	19.97

#### 4)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

법조계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 내에서 10% 내외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다. 법조계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제2호의 '최근 2년 내 회사와 주된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 이행한 바 있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자격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법조계 사외이사 중 상당 수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인데, 이는 '주된' 계약이란 문구로 인해 대형 법무법인이 수행하는 소송이나 자문이 사외이사 본인이 담당하는 소송 등이 아니거나 회사의 주요한 계약이 아니므로 상법 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법령 조항으로 인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법조계 사외이사의 선임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2020년 117명의 법조계 사외이사 중 35명이 다수의 대기업집단 상장회사의 법률대리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대형로펌, 즉 김앤장, 광장, 율촌, 태평양, 화우 등의 현직 고문이나 변호사 등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 중 75~80%는 전직 판검사 출신이다. 이는 전직 공위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관행 등을 통해 기업수사와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표 11> 법조계 사외이사 비중 변동 현황 (단위: %)

분류	2020		2019		2018		2017	
	법조계내	전체내	법조계내	전체내	재계내	전체내	재계내	전체내
판검사	74.36	9.79	77.97	10.90	82.14	11.18	83.02	11.27
변호사	25.64	3.37	22.03	3.08	17.86	2.43	16.98	2.3
계	100.00	13.16	100.00	13.98	100.00	13.61	100	13.57

#### 4.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 1)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변동 현황

경제개혁연구소가 기업집단 사외이사 독립성을 최초로 분석한 2006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외이사는 231명, 전체 사외이사의 37.5%에 달하여 1/3 이상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 독립성이 문제되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30%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 숫자는 200명 미만, 전체 사외이사 내 비중이 24%까지 줄었다. 2019년과 2020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은 각각 22.04%, 19.12%로 2020년 최초로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유별로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의 변동 경향을 살펴보면,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2006년 11.53%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0년 5.06%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히 간접적 이해관계로 규정한 학연의 경우 2006년 전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17.53%에 달했지

만 2015년 이후 1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4.84%로 확인되었다.<sup>8</sup> 반면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 제공 등 계약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 비중은 2008년 2.27%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6.41%까지 증가하였다. 법률자문 제공 등 계약관계 관련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증가는 과거에 비해 회사와 법무법인 간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가 확대된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상법 상 법률대리인의 자격 요건에 '주된' 계약관계라는 단서가 남아 있으므로 명백한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대기업 계열사가 대형 로펌 소속된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표 12> 이해관계 있는 이사 비중 변동 (단위: %)

분류	세부분류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직접이해관계	계열사출신	5.06	6.40	7.65	7.17	6.23	7.52
	제휴/거래처	1.12	1.07	0.61	0.77	0.62	0.64
	소송대리등	6.41	7.70	7.29	6.91	4.86	4.46
	정부/채권단	0.56	0.36	0.12	0.13	0.5	0.76
	기타	1.12	0.95	0.36	0.13	0.12	0.13
	소계	14.29	16.47	16.04	15.11	12.33	13.5
학연		4.84	5.57	7.29	9.35	10.59	10.57
계		19.12	22.04	22.96	24.46	22.91	24.08

분류	세부분류	2012	2010	2009	2008	2007*	2006*
직접이해관계	계열사출신	8.42	8.78	7.77	9.63	10.79	11.53
	제휴/거래처	1.11	1.64	1.75	1.47	1.69	1.46
	소송대리등	3.71	2.81	1.75	2.27	-	-
	정부/채권단	2.1	2.46	2.01	2.67	-	-
	기타	0.74	1.17	1.13	1.34	6.47	6.98
	소계	16.09	16.86	14.41	17.38	18.95	19.97

<sup>8</sup> 단 2019년과 2020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분석한 본 보고서는 고교 관련 학연의 기준을 기존 '경영에 참여하는 지배주주 및 해당 회사 사내이사와의 고교 동문'에서 '~지배주주 및 해당 회사 사내이사와의 10년 내 고교 동문'으로 강화하여 학연 관계 사외이사의 숫자 및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연	12.62	15.34	14.54	14.71	16.49	17.53
계	28.71	32.20	28.95	32.09	35.44	37.5

\* 2006~2007년 사외이사를 분석한 경제개혁리포트 2007-06호에서는 직접 이해관계를 '계열사 임원, 전략적 제휴 및 거래처, 기타'로만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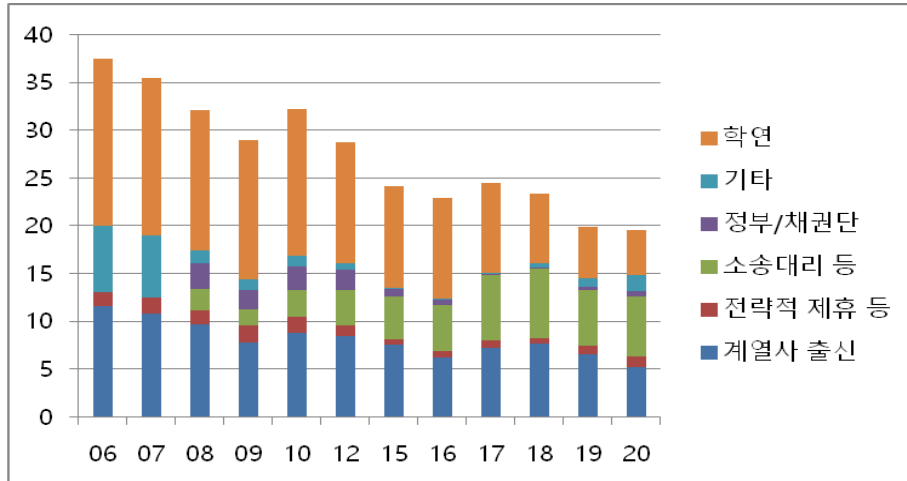
2019년과 2020년의 이해관계 사유 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대비 소송대리 관련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9년 처음으로 소송대리 관련 사외이사와의 역전된 것이다.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2018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대비 33.33%였는데, 2019년과 2020년 29.03%, 26.47%로 감소하고 있다. 기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외이사의 경우 지속적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계열사의 주요 지배구조 사안에 대해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표 13> 2019-2020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현황 (단위: 명, %)

분류	세부분류	2020			2019		
		수	이해관계이 사대비비중	전체대비비 중	수	이해관계이 사대비비중	전체대비비 중
직접이 해관계	계열사출신	45	26.47	5.06	54	29.03	6.40
	제휴/거래처	10	5.88	1.12	9	4.84	1.07
	소송대리등	57	33.53	6.41	65	34.95	7.70
	정부/채권단	5	2.94	0.56	3	1.61	0.36
	기타	10	5.88	1.12	8	4.30	0.95
	소계	127	74.71	14.29	139	74.73	16.47
학연		43	25.29	4.84	47	25.27	5.57
계		170	100.00	19.12	186	100.00	22.04

<그림3> 2019-2020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현황





## 2)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직업군 특징

<표14>를 통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직업군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과 2020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은 전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30~37%에 해당되는 재계 출신 사외이사이다. 이 중 계열회사 출신은 약 22%로 재계 출신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전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28%는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이 중 2/3는 경제금융조세 부처 출신 공무원이며, 전직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사유는 대부분 소송대리 또는 자문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다.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13~18%를 차지한 법조계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사유 역시 대부분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 계약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전직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 및 판검사 출신 사외이사 중 다수가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와 사외이사,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간 이해충돌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형식적 냉각기간만을 거친 전직 고위 공무원을 과거 재직한 부처와 연관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리 감독

했던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경영감시 역할 보다 인맥이나 정보수집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역할로서 영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교수 등 학계 사외이사는 회사와 직접적, 지속적 거래관계나 자문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직접적 이해관계 문제가 전직 공무원이나 법조계, 재계 사외이사에 비해 적은 반면, 학연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직업군으로 확인되었다.

<표 14-1> 2019 년 직업군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 (단위: %)

주요직업	직접 이해관계					학연	총합계
	계열회사	소송대리	전략적제휴	정부채권단	기타		
경제금융조세공무원	0.54	13.44	-	-	0.54	4.30	18.82
기타공무원	-	5.38	-	-	0.54	3.23	9.14
계열회사	22.04	-	-	-	-	-	22.04
금융회사	0.54	1.08	-	0.54	0.54	1.61	4.30
일반회사	0.54	-	2.69	0.54	0.54	2.69	6.99
교수	2.69	0.54	0.54	-	0.54	6.99	11.29
연구원	-	-	-	-	0.54	-	0.54
판검사	1.08	10.75	-	-	-	3.23	15.05
변호사	-	3.23	-	-	-	-	3.23
회계사 등	0.54	0.54	-	-	-	1.08	2.15
언론인	0.54	-	0.54	-	-	1.61	2.69
정치인	-	-	-	0.54	0.54	0.54	1.61
군인/경찰	0.54	-	0.54	-	-	-	1.08
기타	-	-	0.54	-	0.54	-	1.08
총합계	29.03	34.95	4.84	1.61	4.30	25.27	100.00

<표 14-2> 2020 년 직업군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 (단위: %)

주요직업	직접 이해관계					학연	총합계
	계열회사	소송대리	전략적제휴	정부채권단	기타		
경제금융조세공무원	-	15.29	-	-	1.18	2.94	19.41
기타공무원	-	4.71	-	-	-	4.12	8.82

계열회사	22.94	-	-	-	-	-	22.94
금융회사	-	1.18	0.59	2.35	0.59	2.35	7.06
일반회사	-	1.18	2.94	-	1.18	2.94	8.24
교수	2.35	0.59	0.59	-	1.18	8.24	12.94
연구원	-	-	-	-	-	-	-
판검사	0.59	8.82	-	-	-	2.35	11.76
변호사	-	1.76	-	-	-	-	1.76
회계사 등	-	-	-	-	-	1.18	1.18
언론인	-	-	0.59	-	-	0.59	1.18
정치인	-	-	-	0.59	1.18	0.59	2.35
군인/경찰	0.59	-	0.59	-	-	-	1.18
기타	-	-	0.59	-	0.59	-	1.18
총합계	26.47	33.53	5.88	2.94	5.88	25.29	100.00

### 3)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관련 그룹별 특성

2017년과 2018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기업집단은 현대중공업 등 9개 기업집단이었는데, 2019년에는 14개, 2020년에는 1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호석유화학과 넥슨, 삼천리, 대우건설, 동원, 태광 등은 4년 연속 상장 계열사 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없는 기업집단

2019년	2020년
금호석유화학, 네이버, 넥슨, 대우건설, 동국제강, 동원, 삼천리, 세아, 애경, 에스-오일, 유진, 이랜드, 케이티앤지, 태광(총 14개 기업집단)	SM, 금호석유화학, 네이버, 넥슨, 대우건설, 동국제강, 동원, 미래에셋, 삼천리, 애경, 에스-오일, 유진, 이랜드, 카카오, 케이티앤지, 태광, 태영(총 17개 기업집단)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차그룹이다. 2020년에는 에스케이그룹이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숫자가 가장 많으나, 현대차그룹 역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10명이 재직 중이다. 그 밖에 한진, 한화, 엘에스그룹 역시 매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수가 많고 전체 사외이사

내 비중도 높은 기업집단에 포함되고 있다.

반면 두산그룹은 2017년과 2018년까지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상위 기업집단이었는데 계열사의 법률자문 등을 제공한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사외이사와 지배주주와 학연 관계 사외이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중 2019년 임기만료된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지 않아 2019년과 2020년 독립성에 문제 있는 사외이사가 크게 줄었다. 셀트리온그룹 역시 2019년까지 계열사 공동보유자의 피고용인으로서 동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인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거나, 장기간 사외이사로 재직하여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를 연임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으나, 2020년 이들을 모두 재선임하지 않아 독립성에 문제 있는 사외이사가 크게 줄었다. 2019년 영풍그룹의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4명은 모두 계열회사 출신인데, 이 중 3명은 10년 이상 사외이사로 장기 재직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서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0년 임기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았다.

한편 2019년과 2020년 모두 전체 사외이사 대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하이트진로, 한진, 지에스, 엘에스그룹 등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1개 상장계열사의 1명뿐인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와 학연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6>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비중 높은 기업집단(단위:개사,%)

2020				2019			
기업집단	이해관계 이사수	기업집단	전체/이해관계	기업집단	이해관계 이사수	기업집단	전체/이해관계
에스케이	13	호반건설	100.00	현대차	12	호반건설	100.00
현대차	10	하이트진로	66.67	에스케이	11	하이트진로	71.43

삼성	9	교보생명보험		한진	10	넷마블	66.67
롯데	8	금호아시아나	46.15	삼성	9	케이씨씨	62.50
엘에스		농협	43.75	한화		한진	55.56
지에스		지에스	38.10	농협	8	셀트리온	46.15
한진		엘에스	36.36	롯데		영풍	42.86
농협	영풍	35.71	엘에스	농협		42.11	
케이티	7	에이치엠엠	33.33	지에스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6	한진	32.00	신세계	6	DB	41.67
엘지		에이치디씨	30.00	셀트리온		엘에스	36.36
한화		넷마블	28.57	엘지		금호아시아나	35.71
		다우키움	26.67	영풍		한화	34.62

④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많은 기업집단

2019년과 2020년 회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많거나 비중이 높은 기업 집단은 <표17>과 같다. 2018년까지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10명 이상 재직 중 이던 한화와 두산그룹의 경우 2020년 숫자가 크게 줄었다. 반면 삼성그룹은 2020년 신규 선임한 학계 사외이사 중 일부가 회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 숫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영향이 있는데, 하이트진로그룹은 2020년까지 2개 상장 계열사 사외이사의 2/3 이상을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표 17>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비중 높은 기업집단 (단위: 개사, %)

2020				2019			
기업집단	직접이해 이사수	기업집단	전체/직접이해	기업집단	직접이해 이사수	기업집단	전체/직접이해
삼성	9	하이트	66.67	현대차	10	하이트	71.43
현대차	8	교보생명		한진	9	넷마블	66.67
농협	7	농협	43.75	삼성		8	한진
엘에스		금호아시아나	38.46	농협	케이씨씨		
한진		에이치엠엠	33.33	한화	농협		42.11

에스케이		엘에스	31.82	롯데		셀트리온	38.46
케이티		에이치디씨	30.00	에스케이	7	에쓰-오일	33.33
롯데		지에스	28.57	신세계	6	교보생명	
지에스	6	넷마블			하이트	5	한화
엘지		한진	28.00	셀트리온	영풍		28.57
금호아시아 나	5	케이지	25.00	엘지			신세계
한화		대우조선					
신세계							

② 한화그룹 : 계열사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전부 해소

2018년까지 4년 연속 한화그룹은 직접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선임하는 기업집단으로 2018년에도 7개 상장계열사 사외이사 28명의 절반인 14명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들 14명 중 11명이 계열회사 임직원 출신으로 한화그룹은 상위 대기업집단 중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기업집단으로 꼽혔다. 특히 2018년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등의 신규 사외이사를 기존 계열사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대신 또 다른 계열사 출신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엄격한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금융계열사조차 지속적으로 계열사 임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해 왔다.

한화그룹은 2018년 5월 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개방형 사외이사 추천제 도입 등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이 포함되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한화그룹은 독립성이 문제되는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후 재선임하지 않고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순차적으로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표18>와 <표19>를 보면, 2018년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14명 중 13명이 2020년까지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열사 출신 사외이사가 2019명 5명, 2020년 6명 모두 퇴

임하여 2020년 현재 계열회사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는 모두 배제되었다.

<표18> 2019년 임기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은 한화그룹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계열사명	이름	이해관계	관련 경력
한화	강석훈	소송대리	한화케미칼, 한화엘앤씨, 지배주주 김승연 등 법률자문
한화	황의돈	전략적 제휴	회사와 밀접한 거래관계 있는 군출신
한화	김용구	계열회사	
한화케미칼	박석희	계열회사/ 학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제홍	계열회사	10년 이상 사외이사 재직(2009년~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태진	계열회사	
한화생명보험	조규하	계열회사	

<표19> 2020년 한화그룹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계열사명	이름	이해관계	관련 경력	임기관련
한화	이광훈	계열회사		2020년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정병진	계열회사		2020년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김한재	계열회사		2020년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한화손해보험	안승용	계열회사		2020년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한화케미칼	노세래	계열회사		2020년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한화투자증권	이청남	계열회사		2020년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한화투자증권	노태식	소송대리		2021년 임기만료예정
한화	정홍용	전략적 제휴	주요거래처인 군출신 지속 선임	2021년 임기만료예정
한화생명	황영기	소송대리		2021년 임기만료예정
한화생명	이승우	기타	동 회사 자회사(한화손보)와 동종업종 사외이사 겸직으로 이해충돌 우려	2022년 임기만료 예정
한화솔루션	아만다	전략적	거래관계인 St. Augustine	2022년 임기만료 예정

	부시	제휴	Capital Partners의 피고용인	
--	----	----	------------------------	--

### ③ 두산그룹 :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감소

두산그룹은 한화그룹과 마찬가지로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집단이다. 특히 지배주주나 계열사 법률대리를 담당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사외이사를 다수 선임해 왔다. 2018년 두산그룹 7개 상장계열사 27명 사외이사 중 9명이 소송대리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였으며 이 중 7명이 김앤장 소속이었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2019년부터 김앤장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후 재선임을 배제하고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하여 순차적으로 독립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표20>과 <표21>을 보면, 2018년 소송대리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 9명 중 2019년 6명, 2020년 2명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되었다. 9명 중 남은 1명인 박헌세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두산건설은 2020년 3월 상장폐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비상장회사 두산건설 사외이사 임기만료는 2021년 3월이었으나 2020년 4월 사임하였다.

단 한화그룹과 달리 두산그룹은 2019년 이후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중 일부를 김앤장 소속 인사로 선임하여 여전히 대형 로펌과의 이해충돌 우려를 남기고 있다. 2019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 (주)두산의 천성관, 오리콤 이제호, 두산중공업 이준호 사외이사는 모두 김앤장 소속으로 이들의 임기는 2022년 만료 예정이다.

<표20> 2019년 임기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은 두산그룹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계열사명	이름	이해관계	관련 경력
------	----	------	-------



두산건설	천성관	소송대리/학연	현) 김앤장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배주주 박용만과 경기도 동문
두산밥캣	이종열	소송대리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고문(현) 전) 김앤장법률사무소 조세부문 대표
두산밥캣	백창훈	소송대리	김앤장 변호사
두산엔진	홍동표	소송대리/학연	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4년 김앤장 고문 지배주주 박용만과 경기도 동문
두산중공업	차동민	소송대리	현) 김앤장 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두산	송광수	소송대리	현) 김앤장 변호사 전)검찰총장

<표21> 2020년 한화그룹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계열사명	이름	이해관계	관련 경력	임기관련
두산밥캣	김희선	소송대리/ 학연	김앤장 소속	2020년 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두산인프라코어	정병문	소송대리	김앤장 소속	2020년 3월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두산건설	박헌세	소송대리	김앤장 소속 회계사	2020년 두산건설 상장폐지 로 분석대상 제외 임기만료(2021년) 전 사임 (2020년 4월)
두산	천성관	소송대리	김앤장 소속	2019년 선임 2022년 3월 임기만료
오리콤	이제호	소송대리	김앤장 소속	2019년 선임 2022년 3월 임기만료
두산중공업	이준호	소송대리	김앤장 소속	2019년 선임 2022년 3월 임기만료

#### ④ 한진그룹 : 법률대리 관련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증가

한진그룹은 법률대리 관련 이해관계가 우려되는 사외이사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10명 중 7명이 법률대리 관련 이해관계 있는 이사였다. 특히

이들은 지배주주 일가의 법률대리와 관련된 법무법인 소속이다. 고 조양호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 일가는 수 년 간 개인비리 및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양한 재판을 받아왔는데, 지배주주의 인척 관계로 볼 수 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화우 등 대표적 로펌들이 법률대리를 맡은 바 있다. 특히 2018년까지 대한항공 사외이사 중 3명이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이사회 내 균형과 독립성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었다. 2019년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안용석, 정진수 사외이사는 임기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았으나, 2021년 임기만료 예정인 광장 소속 임채민 사외이사는 2020년 현재 재직 중이다. 그 밖에도 지배주주 조현민의 갑질 논란 관련 검찰 대응과 고 조양호 회장의 자택 공사 비리 등 배임 혐의 관련 법률대리인 등을 수행한 법무법인 율촌과 조현아와 KCGI 등 한진칼 특정주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데, 이들의 임기는 2022년~2023년 만료 예정으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22> 2019-2020년 한진그룹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계열사명	이름	이해관계	관련 경력	임기관련
대한항공	안용석	소송대리	광장 소속	2019년 임기만료/재선임 안함
대한항공	정진수	소송대리	화우 소속	2019년 임기만료/재선임 안함
진에어	곽장운	소송대리	광장 소속	2019년 임기만료/재선임 안함
대한항공	임채민	소송대리	광장 소속	2018년 선임 2021년 임기만료 예정
한진칼	주순식	소송대리	율촌 소속	2019년 선임 2022년 임기만료 예정
한진	성용락	소송대리	태평양 소속	2020년 재선임 2023년 임기만료 예정
진에어	박은재	소송대리	율촌 소속	2020년 재선임 2023년 임기만료 예정
한국공항	성시철	거래관계	전 공항공사 임원	2019년 재선임 2022년 임기만료 예정
한국공항	박상용	소송대리	율촌 소속	2020년 재선임 2023년 임기만료 예정
진에어	정중원	소송대리	태평양 소속	2020년 신규선임

				2023년 임기만료 예정
--	--	--	--	---------------

⑤ 하이트진로그룹 :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모두 계열사 출신

하이트진로그룹의 2개 상장 계열사는 지속적으로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을 다수 사외이사로 선임해 왔다. 2019년 이후 독립성에 문제 있는 사외이사를 교체하고 있는 한화, 두산그룹과 달리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6~7명의 2/3 이상이 여전히 계열사 임직원 출신이다. 과거 동 회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던 김영기, 정병교, 조판제 하이트진로 사외이사가 2019~2020년 사이에 임기만료 후 재선임되지 않았으나, 신규 선임된 이구연, 임재범 사외이사 역시 하이트진로에서 장기간 재직한 임직원 출신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한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김명규 사외이사는 1949년생의 고령으로 동 회사 및 계열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동 회사 사외이사로 2013년 3월 최초 선임되어 2020년 현재 8년째 재직 중이다.

<표23> 2019-2020년 하이트진로그룹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계열사명	이름	이해관계	관련 경력	임기관련
하이트진로	이구연	계열회사	동 회사 재직 경력	
하이트진로	임재범	계열회사	전 임원	
하이트진로홀딩스	김명규	계열회사	동 회사 재직 경력	2013년 최초 선임 2022년 임기만료예정
하이트진로홀딩스	윤용수	계열회사	전 임원	
하이트진로	김영기	계열회사	동 회사 재직 경력	2020년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하이트진로	정병교	계열회사	전 계열사 대표이사	2020년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하이트진로	조판제	계열회사	동 회사 재직 경력	2019년 임기만료 재선임 안함

⑥ 학연 관계 사외이사 많은 기업집단

앞서 언급했듯이 본 보고서는 간접적 이해관계인 '학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9년과 2020년 분석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학연 관계에 있는 사외이사가 눈에 띄는 기업집단이 이전 보고서와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에스그룹의 경우 2015년 후 2018년까지 학연 관계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으로 2015~16년에는 9명에 달했으나 2019년 4명, 2020년에는 2명으로 거의 해소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연' 관계 기준 변화 외에도 경남고를 졸업한 지배주주 허창수의 경영은퇴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DB그룹은 2020년까지 학연관계 사외이사 숫자 및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DB그룹 역시 지에스, 엘에스그룹 등과 마찬가지로 경기고를 졸업한 지배주주 김준기 전 회장과 학연관계인 사외이사가 많았는데, 김준기 전 회장의 복역으로 인한 경영공백과 2020년 7월 김남호 회장의 취임 등으로 향후 학연관계 사외이사 비중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에도 DB그룹 계열사 내 김준기 전 회장과 경기고 동문이던 사외이사는 총 5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명으로 대폭 줄었다. 한라그룹 역시 2019년 지배주주 정몽원 이사와 서울고 동문이던 만도, 한라, 한라홀딩스 사외이사 4명 중 2020년 만료된 3명을 재선임하지 않았으나, 신규 선임한 4명의 사외이사 중 1명은 다시 서울고 출신이었다. 영풍그룹 지배주주 일가이자 영풍정밀 대표이사인 최창규 이사는 1969년 경북고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0년 신규 선임된 정순원, 홍석주 사외이사 역시 각각 1970년, 1971년 경북고를 졸업하여 2020년 영풍정밀 이사회 6명 중 3명이 근접한 시기의 경북고 동문으로 이루어졌다.

<표 24> 학연관계사외이사가 많은/비중 높은 기업집단(단위:개사,%)

2020				2019			
기업집단	이해관계	기업집단	전체/이	기업집단	이해관계	기업집단	전체/이해

	이사수		해관계		이사수		관계
에스케이	6	호반건설	100.00	DB	5	호반건설	100.00
영풍	4	영풍	28.57	지에스	4	DB	41.67
씨제이	3	한라	18.18	엘에스		한라	23.08
지에스	2	한국금융	16.67	에스케이		오씨아이	22.22
현대차		DB	15.38	씨제이	3	지에스	21.05
두산		씨제이	12.50	한라		엘에스	18.18
효성		삼양		영풍		2	한국금융
DB		케이씨씨	11.11	금호아시아나	영풍		14.29
한라		오씨아이		현대차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효성	케이씨씨	12.50	
				오씨아이	아모레		

### ⑦ 기타 2019-2020년 기업집단 특이사항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요 계열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인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9년 선임된 금호산업의 이상열 사외이사는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가정책자문단 부단장이었으며, 이근식 사외이사는 전 열린민주당 당대표였다. 2018년 선임된 이형석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는 광주지역 민주당 기초의원 및 당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코오롱그룹의 홍재형 코오롱글로벌 사외이사는 경제부총리 출신 고위 관료이자 16~18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친정부 인사 낙하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코오롱그룹은 2018년에도 민주당 소속 유인태 사외이사를 선임했는데, 유인태 이사는 국회 사무처장직을 수행함에 따라 3개월 만에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편 2019년 케이씨씨그룹의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5명 중 4명은 계열회사 출신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권오승 사외이사와 정종순 사외이사는 9~12년 장기재직 중이었

다. 2020년 사외이사의 단일 회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자 케이씨씨그룹은 재선임 자체가 법령위반이 되는 권오승, 정종순 사외이사는 물론 계열회사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송태남 케이씨씨 사외이사와 최창렬 케이씨씨건설 사외이사까지 모두 교체하였다. 셀트리온그룹의 셀트리온 역시 2019년까지 사외이사 6명 중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가 3명(김동일, 이요셉, 조균석 사외이사)이나 되었는데, 2020년 임기가 만료되자 모두 재선임하지 않고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하였다.

### III. 감사

#### 1. 선임 현황

경제개혁연구소는 2012년부터 감사의 독립성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2012년 250개사였던 분석대상은 2020년 276개사로 늘어났는데 비해 감사를 선임하는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수는 매년 감소하여, 2020년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75%는 감사제도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반면 감사를 선임한 회사는 2012년 34.4%에서 2020년에는 24.28%까지 10%p 이상 감소하였다. 총 감사의 수 역시 2012년 100명에서 2020년 77명으로 감소했으나, 평균 감사의 수는 최근 8년 동안 약 1.15명으로 변동이 없어 감사를 선임하는 회사는 대부분 상근 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감사 선임 현황 변동 (단위: 개사, 명, %)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2
상장회사 수	276	262	264	259	247	248	250
감사선임 기업집단 수	29	27	29	30	25	29	36
감사 선임한 회사 수	67	63	71	77	66	77	86
감사선임회사/ 상장회사	24.28	24.05	27	29.73	26.73	31.05	34.4
감사 총수	77	73	81	88	75	89	100
평균 감사 수	1.15	1.16	1.14	1.14	1.14	1.16	1.16

## 2. 감사의 직업군

감사 직업군은 계열회사를 포함한 재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 일부 차지하며, 기타 법조계나 학계 감사는 사외이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 비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재계 사외이사는 2015년까지 전체 감사의 약 60% 내외였다가 2018년 76.54%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다시 67.53%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공무원 출신 감사는 재계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유의미한 비중을 가진 감사 직업군이었는데, 2015년 22.4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0.96%, 11.69%까지 줄었다. 공무원 출신 감사는 경제금융조세부처 공무원이 기타부처 출신보다 두 배 정도 많다. 즉 대기업집단은 재계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점이 뚜렷하며 차선으로 경제부처 출신 공무원을 선호하는데, 이는 기업경영 관련 분석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감사의 역할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감사는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만큼 경영감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회사측은 경영에 대한 이해를 넘어 회사의 내부 사정에 익숙한 동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비교적 지배구조가 우수한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이후 분석 대상 재계 감사 중

절반 가까이 전현직 계열사 임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과 2020년에도 재계 감사 53명과 52명 중 각각 23명과 25명이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단 전체 감사 내 계열사 출신 감사의 비중은 2016년 36%까지 늘어났으나, 2019년 31.51%, 2020년 32.47%까지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6>감사의 직업군 분포(단위:명,%)

분류	세부분류	2020		2019		2018		2017	
		감사수	비중	감사수	비중	감사수	비중	감사수	비중
재계	계열회사	25	32.47	23	31.51	27	33.33	31	35.23
	금융회사	12	15.58	15	20.55	17	20.99	17	19.32
	일반회사	15	19.48	15	20.55	18	22.22	16	18.18
	소계	52	67.53	53	72.60	62	76.54	64	72.73
관료	경제금융조세공무원	6	7.79	4	5.48	7	8.64	9	10.23
	기타부처공무원	3	3.90	4	5.48	3	3.7	2	2.27
	소계	9	11.69	8	10.96	10	12.34	11	12.5
법조계	판검사	1	1.30	-	-	-	-	-	-
	변호사	4	5.19	3	4.11	2	2.47	3	3.41
	소계	5	6.49	3	4.11	2	2.47	3	3.41
학계	교수	2	2.60	2	2.74	1	1.23	2	2.27
	연구원	-	-	-	-	-	-	-	-
	소계	2	2.60	2	2.74	1	1.23	2	2.27
회계사등		5	6.49	4	5.48	5	6.17	5	5.68
언론계		3	3.90	2	2.74	1	1.23	2	2.27
정치인		-	-	-	-	-	-	-	-
기타		1	1.30	1	1.37	-	-	1	1.14
계		77	100.00	73	100.00	81	100	88	100

### 3. 이해관계 있는 감사

#### 1) 이해관계 있는 감사 변동 현황

감사의 독립성을 처음 분석한 2012년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47%였으며, 이후



2018년에는 40% 이하까지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비중은 다시 상승하여 41.1%, 42.86%를 나타냈다. 독립성이 문제되는 사외이사의 경우 비중이 2020년 20% 미만까지 하락했고, 약 15년 동안 숫자와 비중이 명백하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해관계 있는 감사 비중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40% 이상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이해가 확립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대부분은 계열사 임직원 출신으로 회사 및 지배주주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8년까지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약 85%가 계열사 임직원 재직 경력이 문제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계열사 출신 감사가 이해관계 사유의 7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사 중에서도 계열사 출신 감사는 2020년까지 1/3 이상 차지하고 있다. 해당 회사나 계열사에 장기간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직접적,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도 이미 회사에 우호적 입장에 서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감사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고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를 제대로 보고하는 등 감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계열사 출신 감사는 대체로 사외이사보다 오랜 기간, 즉 사회 경력의 대부분을 해당 회사나 계열사에서 임직원으로서 쌓은 경우가 많아 회사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 현재 법령 상 감사의 계열사 재직 관련 자격제한 조항은 사외이사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데, 감사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7> 이해관계 있는 감사 현황 (단위: 명, %)

	2020			2019			2018			2017		
	감사	비중	비중	감사	비중	비중	감사	비중	비중	감사	비중	비중

		수	A	B	수	A	B	수	A	B	수	A	B
직접 이해 관계	계열사	27	81.82	35.06	24	80.00	32.88	27	84.38	33.33	31	83.78	35.23
	제휴/거래처	1	3.03	1.30	2	6.67	2.74	2	6.25	2.47	1	2.7	1.14
	소송대리	-	-	-	-	-	-	1	3.13	1.23	1	2.7	1.14
	정부/채권단	3	9.09	3.90	2	6.67	2.74	1	3.13	1.23	2	5.41	2.27
	기타	-	-	-	-	-	-	-	-	-	-	-	-
	소계	31	93.94	40.26	28	93.33	38.36	31	96.88	38.27	35	94.59	39.77
학연관계		2	6.06	2.60	2	6.67	2.74	1	3.13	1.23	2	5.41	2.27
계		33	100	42.86	30	100	41.10	32	100	39.51	37	100	42.05

\* 비중 A : 이해관계 사유별 감사 / 전체 이해관계 있는 감사

비중 B : 이해관계 사유별 감사 / 전체 분석 대상 감사

## 2)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직업군

이해관계 있는 감사 직업군은 약 95% 이상 재계 출신 감사이다. 이는 2015년 88%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7년 이후 95%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표 28>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직업군 분포 (단위: 명)

	2020				2019			
	계열회사	기타직접 이해관계	학연	계	계열회사	기타직접 이해관계	학연	계
재계	25	4	2	31	23	4	2	29
관료	-	-	-	-	-	-	-	-
법조계	1	-	-	1	1	-	-	1
학계	-	1	-	1	-	-	-	-
회계사 등	-	-	-	-	-	-	-	-
언론계	-	-	-	-	-	-	-	-
정치인	-	-	-	-	-	-	-	-
기타	-	-	-	-	-	-	-	-
계	26	5	2	33	24	4	2	30

## 3) 직접 이해관계 있는 감사 관련 기업집단별 특징

2020년 계열사 임직원 출신 감사가 많은 기업집단은 동원, 포스코, 에스케이, 영풍그룹으

로 동원과 포스코그룹은 4명, 에스케이와 영풍그룹은 각각 3명의 감사가 장기간 계열사 재직 경력이 있다. 동원과 영풍그룹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다수의 계열사에 전현직 계열사 임원을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3개 상장 계열사에서는 2명의 상근감사가 재직 중인데, 박문서 감사는 지주회사 격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경영지원본부장을 현재까지 역임해왔으며, 3개 계열사 감사를 겸직 중이다. 2019년 선임된 오종환 동원시스템즈 감사 역시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상근감사를 겸직하고 있다. 자회사의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등 사내이사가 아닌 이상 경영감시 의무가 있는 감사를 다수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에스케이그룹 계열사 나노엔텍의 김용진 감사 상장회사인 나노엔텍 외에 3개 비상장 계열사의 감사를 겸직 중이다.

포스코그룹은 4개 계열사에 감사 제도를 운영 중인데, 4명의 감사 모두 모회사 포스코 등 계열사에서 재직한 경력이 길다. 에스케이그룹 역시 서건기 부산도시가스 감사는 모회사 SK E&S의 현직 재무본부장이며, 김영남 에스케이디앤디 감사는 그룹 경영기획실과 구조본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력을 고려할 때 소위 그룹측에 우호적인 'SK맨'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감사로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영풍그룹 성병준 감사는 시그네틱스, 코리아씨키트, 인터플렉스 등 3개 상장계열사 감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코리아씨키트와 인터플렉스는 2008년 최초 선임되어 10년을 초과 재직하고 있다. 다수의 계열사에서 장기간 상근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감사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29> 직접 이해관계 있는 감사 많은 기업집단 감사 현황

그룹명	회사명	이름	주요경력
동원	동원에프앤비	박문서	2007년 동원엔터프라이즈 경영관리실장(전무)
	동원산업		同경영지원본부장(전무)
	동원시스템즈		2011년 同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
	동원시스템즈	오종환	2018년 同경영지원본부장(사장)(현)" 동원엔터프라이즈 상근감사 겸직
포스코	포스코아이씨티	김주현	전) 포스코 AST 상무보, 경영지원본부장
	포스코엠텍	김진영	전) 포스코 감사그룹장
	포스코강판	윤석채	POSCO-China 부장/포스코특수강 상임감사(現 세아창원특수강
	포스코케미칼	이조영	2018~2019 포스코에너지 정도경영실장2010~2018 포스코 정도경영실 그룹장, 리더 2020~현재 포스코에너지 상임감사 "
에스케이	나노엔텍	김용진	sk 스토아, sk 텔링크, 피에스앤마케팅 등 4개 계열사 감사 겸직
	부산도시가스	서건기	현) SK E&S(주) 재무본부장
	에스케이디앤디	김영남	전) SK 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전) SK 그룹 구조조정본부 상무 전) SK 임업 부사장, SK 임업 대표이사 사장
영풍	시그네틱스	성병준	3개 계열사 감사 겸직
	코리아써킷		2008년 최초 선임
	인터플렉스		2008년 최초 선임

#### 4) 학연관계 감사 있는 기업집단

2019년과 2020년 학연관계로 독립성이 우려되는 감사는 2명인데, 오씨아이그룹 계열사 유니드의 배길훈 감사는 지배주주 일가인 고 이수영 회장의 고교 동문으로 2017년 최초 선임되었는데, 2020년 재선임되어 2023년까지 재직할 예정이다. 2020년 신규선임된 효성그룹의 류두구 효성아이티엑스 감사는 회사의 남경환 대표이사와 경북고 동기동창으로 이해관계가 의심된다.

#### 4. 감사선임 안건 부결된 기업집단 계열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선임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쳐서 3%로 제한되고 기타 3% 초과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과 합치지 않고 3%로 제한된다. 2017년 새도보팅 폐지 이후 감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져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감사 및 감사위원선임 안건이 부결된 상장회사는 2018년 56개, 2019년 149개, 2020년에는 315개이다. 2020년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중에서는 6개 회사에서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이 중 김용진 나노엔텍 감사와 성병준 시그네틱스 감사, 정순도 이월드 감사는 이해관계 있는 감사에 해당되며, 정순도 감사선임 안건은 2019년과 2020년 3월 정기주총, 5월 임시주총에서 3회 연속 부결되었다. 감사선임 안건 부결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 상법 입법예고안과 같이 성급하게 결의요건을 완화하기보다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총참석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회사는 전자투표제 도입 외에도 주총공고를 앞당겨 주총소집기간을 확대하거나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감사선임 안건이 부결된 대기업집단 상장계열사 6개사 중 절반인 3개사만이 전자투표제를 실시했으며, 주총소집기간은 평균 15일로 법령 요건인 2주를 가까스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0> 감사선임 안건 부결된 분석 대상 회사 현황

기업집단	계열사	감사명	전자투표 (2020년)	주총소집기 간(2020년)	비고
에스케이	나노엔텍	김용진	도입	3/4~3/19	계열사 임직원 경력
씨제이	씨제이씨푸드	박기영	미도입	3/9~3/24	
영풍	시그네틱스	성병준	도입	3/9~3/24	계열사 임직원 경력

오씨아이	이테크건설	전용권	미도입	2/24~3/12	
SM	티케이케미칼	양문석	미도입	3/9~3/24	
이랜드	이월드	정순도	도입	3/12~3/27 5/13~5/28	2010년 최초선임-장기재직 2019년 및 2020년 3월, 5월 연속 선임 부결

#### IV. 결론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9년과 2020년 법령상 사외이사 선임 기준 25%를 크게 상회하는 평균 49%이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로 규정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가 대기업집단에 다수 소속되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2020년 분석 대상 사외이사는 889명이며, 매년 약 200명, 전체 사외이사 20% 내외가 신규 사외이사로 교체된다.

둘째, 사외이사의 직업군은 15년 전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을 비롯한 재계 사외이사가 30% 이상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0년 현재 20%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교수 등 학계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 27%에서 2020년 37%까지 증가하였다. 사외이사 주요 직업군의 변동은 실제 기업경영을 경험한 사외이사를 선호하던 경향에서 최근에는 전문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배제하는 영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셋째, 2020년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전체 사외이사의 19.12%이다. 2006년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외이사 비중은 37%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약 25%, 2020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약 75%는 해당 회사나 계열사의 임직원 출신이거나 회사와 거래관계 등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며, 25%는 학연 등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화와 두산그룹은 2018년까지 각각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과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는 대형 로펌 소속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다수 선임해 왔으나, 2019년과 2020년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후 재선임하지 않는 등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소 중이다. 이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 등 법령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 조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분석 대상 중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약 25%로 2020년 67개 회사에서 77명의 감사가 재직 중이다. 이 중 이해관계 있는 감사 비중은 사외이사에 비해 훨씬 높아 2020년 43%에 이른다. 또 독립성에 문제 있는 사외이사 비중이 2006년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한 데 비해 2012년 이후 이해관계 있는 감사 비중은 40%를 상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 있는 감사의 75%가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 출신이다. 계열사에 장기간 재직해 임직원은 일시적 거래관계나 자문제공보다 회사와 훨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이해관계 사유보다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의 자격요건, 특히 계열사 출신 임직원의 선임에 대해 법령 제정 및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수 차례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이사회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주주총회 개최 직전인 2월에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단일 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되고, 2) 전현직 계열사 임직원의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3)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선임 의무화(2020년 8월 시행)되는 등 사외이사 제도가 강화되었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7월 1일에는 법무부가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의원입법 발의안 역시 20대 국회에 이어 2020년 7월 현재 복수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표31>은 사외이사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의 골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계열사 임직원 출신 선임 관련 냉각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사외이사 최대 재직한도가 6년 및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설정되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자격제한 요건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독립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최근 다수 회사의 감사선임 안건 부결 문제가 새도보팅 제도 폐지 외에 의결권 3% 제한 룰에 의한 것이라는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투표 도입 시 주총 안건 결의요건을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입법예고되었던 상법 개정안에 비해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을 배제하고, 감사위원회 분리선출도 축소하는



등 개혁성과 실효성 모두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 의원발의안, 특히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과 소수주주권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항을 도입하였다. 우선 이사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사 해임을 소수주주가 추진하기 쉽도록 하였다. 이사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20대 국회 김종인, 채이배 의원 발의 법안에서 제안되었던 독립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사추위의 독립성 강화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 밖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8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에도 관련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우선 경제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확정된 임원(사외이사 및 감사 제외)은 형 집행 후 2년 동안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의무화하고 현행 주총일 2주 전까지 공시하게 된 주총공고를 4주 전 공시로 강화하였다. 그 밖에 회사 홈페이지 공시 의무화 등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 강화하였다.

향후 상법 등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하여 법무부 개정안 뿐 아니라 의원 발의안을 포함하여 심도 깊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의 경우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등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동 회사 및 계열사 냉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 외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지 않아 감사의 경우 겸직 금지 의무만 있다. 단 자산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1명 이상 주총에서 선임해야 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년 내 동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이나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감사의 지

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상장회사 감사의 경우 사외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격요건을 법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포괄하여 등기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사외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외에 여성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에 따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풀의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사외이사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 사외이사 제도 관련 법령 개정 진행사항

구분	세부조항	법무부 상법개정안	의원발의 상법개정안	상장회사특례법제정안(이용우의원)
	계열회사임직원 냉각기간강화	개정 상법 시행령 (2020.3 시행)	기존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	
	사외이사 재직 기간 제한		단일 회사 6 년, 계열사 합산 9 년	
	불법행위 이사 자격상실	-	횡령배임 및 분식 회계 이사해임 안 건 단독주주권(박 용진 의원안)	- 형사법 위반 금고 형 또는 - 경제관련법률 위 반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후 2 년 내 임원* 자격상실
선임방법	사외이사후보추 천위원회 구성	-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 위원회 배 제 (박용진 의원안)	-
	독립 사외이사 선임	-	우리사주 및 소액 주주 추천 사외이 사 1 인선임 의무 화(박용진 의원안)	-
	집중투표제 의 무화	-	2 인이상 선임시 의무화(박용진 의 원안)	-
	전자투표제 활 성화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위원 결의요 건 출석주주 과반	단계적 의무화(박 용진 의원안)	전자투표 도입시 감 사위원 결의요건 출 석주주 과반수로 완

		수로 완화		화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1인 이상 분리선출	자산 2조원이상회사 1인 이상 분리선출(박용진 의원안)	분리선출 의무화 최대주주 합산 3%, 일반주주 개별 3% 의결권 제한
	서면투표 활성화	-	이사회 결의(박정 의원안)	
	주총 소집공고	-	-	주총일 2주전->4주전 의무공시
기타 소수주주권 강화	주주대표소송 활성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단독주주권 및 이 중대표소송 허용 (김주영의원안) 이중대표소송 허 용(박용진 의원안)	- 대표소송 원고 주 주자격 상실 후 원 고자격 인정 - 회사 홈페이지 공 시 확대 및 강화

\* 사외이사 및 감사 제외

<부표 1> 2019 년기업집단별이해관계있는사외이사현황

기업집단	사외이사 총계 (A)	이해관계있는이사수							이해관계이사비중				
		직접이해관계(B)						학연(C)	총계(D)	직접이해(B/A)	학연(C/A)	이해관계(D/A)	
		계열사	소송대리	전략적 제휴	정부채권단	기타	소계						
DB	12	-	-	-	-	-	-	5	5	-	41.67	41.67	
SM	7	1	-	-	-	-	-	1	1	14.29	-	14.29	
교보생명보험	3	1	-	-	-	-	-	1	1	33.33	-	33.33	
금호석유화학	7	-	-	-	-	-	-	-	-	-	-	-	
금호아시아나	14	-	-	-	-	-	3	3	2	5	21.43	14.29	35.71
네이버	4	-	1	-	-	-	-	1	-	1	25.00	-	25.00
넥슨	1	-	-	-	-	-	-	-	-	-	-	-	-
넷마블	3	-	-	2	-	-	-	2	-	2	66.67	-	66.67
농협	19	8	-	-	-	-	-	8	-	8	42.11	-	42.11
다우키움	13	3	-	-	-	-	-	3	1	4	23.08	7.69	30.77
대림	10	-	-	-	-	1	-	1	-	1	10.00	-	10.00
대우건설	4	-	-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4	-	-	-	-	1	-	1	-	1	25.00	-	25.00
동국제강	9	-	1	-	-	-	-	1	-	1	11.11	-	11.11
동원	4	-	-	-	-	-	-	-	-	-	-	-	-
두산	21	-	4	-	-	-	-	4	-	4	19.05	-	19.05
롯데	42	-	7	-	-	-	1	8	-	8	19.05	-	19.05
미래에셋	8	1	-	-	-	-	-	1	-	1	12.50	-	12.50
삼성	58	1	5	-	-	-	3	9	-	9	15.52	-	15.52
삼천리	3	-	-	-	-	-	-	-	-	-	-	-	-
세아	10	-	-	-	-	-	-	-	-	-	-	-	-
셀트리온	13	3	-	2	-	-	-	5	1	6	38.46	7.69	46.15
신세계	23	-	6	-	-	-	-	6	-	6	26.09	-	26.09
씨제이	26	-	1	-	-	-	-	1	3	4	3.85	11.54	15.38
아모레퍼시픽	8	-	-	-	-	-	-	-	1	1	-	12.50	12.50
애경	10	-	-	-	-	-	-	-	-	-	-	-	-
에스케이	54	-	7	-	-	-	-	7	4	11	12.96	7.41	20.37
에쓰-오일	6	-	2	-	-	-	-	2	-	2	33.33	-	33.33
에이치디씨	10	2	-	-	-	-	-	2	-	2	20.00	-	20.00
엘에스	22	4	-	-	-	-	-	4	4	8	18.18	18.18	36.36
엘지	42	2	2	1	-	-	-	5	1	6	11.90	2.38	14.29
영풍	14	4	-	-	-	-	-	4	2	6	28.57	14.29	42.86
오씨아이	9	-	-	-	-	-	-	-	2	2	-	22.22	22.22
유진	10	-	-	-	-	-	-	-	-	-	-	-	-
이랜드	2	-	-	-	-	-	-	-	-	-	-	-	-
지에스	19	3	1	-	-	-	-	4	4	8	21.05	21.05	42.11
카카오	4	-	-	1	-	-	-	1	-	1	25.00	-	25.00
케이씨씨	8	4	-	-	-	-	-	4	1	5	50.00	12.50	62.50
케이티	34	2	-	1	1	-	-	4	-	4	11.76	-	11.76
케이티앤지	9	-	-	-	-	-	-	-	-	-	-	-	-
코오롱	13	-	-	-	-	-	1	1	1	2	7.69	7.69	15.38
태광	9	-	-	-	-	-	-	-	-	-	-	-	-
태영	11	1	-	-	-	-	-	1	-	1	9.09	-	9.09
포스코	15	2	1	-	-	-	-	3	1	4	20.00	6.67	26.67
하림	21	-	1	-	-	-	-	1	1	2	4.76	4.76	9.52
하이트진로	7	5	-	-	-	-	-	5	-	5	71.43	-	71.43

한국금융지주	6	-	-	-	-	-	-	1	1	-	16.67	16.67
한국타이어	9	1	-	-	-	-	1	1	2	11.11	11.11	22.22
한라	13	-	-	-	-	-	-	3	3	-	23.08	23.08
한진	18	-	8	1	-	-	9	1	10	50.00	5.56	55.56
한화	26	6	1	1	-	-	8	1	9	30.77	3.85	34.62
현대백화점	23	-	2	-	-	-	2	-	2	8.70	-	8.70
현대자동차	50	-	10	-	-	-	10	2	12	20.00	4.00	24.00
현대중공업	16	-	3	-	-	-	3	1	4	18.75	6.25	25.00
호반건설	1	-	-	-	-	-	-	1	1	-	100.00	100.00
효성	27	-	2	-	-	-	2	2	4	7.41	7.41	14.81
총합계	844	54	65	9	3	8	139	47	186	16.47	5.57	22.04

<부표2> 2020년 기업집단별 이해관계 있는 사외이사 현황

기업집단	사외이사 총계 (A)	이해관계 있는 이사 수							이해관계 이사 비중			
		직접이해관계(B)						학연(C)	총계 (D)	직접이해 (B/A)	학연 (C/A)	이해관계 (D/A)
		계열사	소송 대리	전략적 제휴	정부채 권단	기타	소계					
DB	13	1	-	-	-	-	1	2	3	7.69	15.38	23.08
SM	7	-	-	-	-	-	-	-	-	-	-	-
교보생명보험	3	2	-	-	-	-	2	-	2	66.67	-	66.67
금호석유화학	7	-	-	-	-	-	-	-	-	-	-	-
금호아시아나	13	2	-	-	-	3	5	1	6	38.46	7.69	46.15
네이버	4	-	-	-	-	-	-	-	-	-	-	-
넥슨	1	-	-	-	-	-	-	-	-	-	-	-
넷마블	7	-	-	2	-	-	2	-	2	28.57	-	28.57
농협	16	7	-	-	-	-	7	-	7	43.75	-	43.75
농협	1	-	-	-	-	-	-	-	-	-	-	-
다우키움	15	3	-	-	-	-	3	1	4	20.00	6.67	26.67
대림	10	-	-	-	1	-	1	-	1	10.00	-	10.00
대우건설	4	-	-	-	-	-	-	-	-	-	-	-
대우조선해양	4	-	-	-	1	-	1	-	1	25.00	-	25.00
동국제강	9	-	-	-	-	-	-	-	-	-	-	-
동원	5	-	-	-	-	-	-	-	-	-	-	-
두산	26	-	3	-	-	-	3	2	5	11.54	7.69	19.23
롯데	41	-	7	-	-	-	7	1	8	17.07	2.44	19.51
미래에셋	9	-	-	-	-	-	-	-	-	-	-	-
삼성	61	1	5	-	-	3	9	-	9	14.75	-	14.75
삼양	8	1	-	-	-	-	1	1	2	12.50	12.50	25.00
삼천리	3	-	-	-	-	-	-	-	-	-	-	-
세아	10	-	-	-	-	-	-	1	1	-	10.00	10.00
셀트리온	11	-	-	1	-	-	1	1	2	9.09	9.09	18.18
신세계	23	-	5	-	-	-	5	-	5	21.74	-	21.74
씨제이	24	-	1	-	-	-	1	3	4	4.17	12.50	16.67
아모레퍼시픽	10	-	-	-	-	-	-	1	1	-	10.00	10.00
애경	10	-	-	-	-	-	-	-	-	-	-	-
에스케이	58	-	7	-	-	-	7	6	13	12.07	10.34	22.41
에쓰-오일	6	-	-	-	-	-	-	-	-	-	-	-
에이치디씨	10	2	1	-	-	-	3	-	3	30.00	-	30.00
에이치엠엠	3	1	-	-	-	-	1	-	1	33.33	-	33.33
엘에스	22	6	1	-	-	-	7	1	8	31.82	4.55	36.36
엘지	45	2	2	1	-	1	6	-	6	13.33	-	13.33
영풍	14	1	-	-	-	-	1	4	5	7.14	28.57	35.71
오씨아이	9	1	-	-	-	-	1	1	2	11.11	11.11	22.22
유진	10	-	-	-	-	-	-	-	-	-	-	-
이랜드	2	-	-	-	-	-	-	-	-	-	-	-
지에스	21	5	1	-	-	-	6	2	8	28.57	9.52	38.10
카카오	4	-	-	-	-	-	-	-	-	-	-	-
케이씨씨	8	-	-	-	-	-	-	1	1	-	12.50	12.50
케이지	8	-	-	-	2	-	2	-	2	25.00	-	25.00
케이티	34	4	-	2	1	-	7	-	7	20.59	-	20.59
케이티앤지	8	-	-	-	-	-	-	-	-	-	-	-

코오롱	13	-	-	-	-	1	1	1	2	7.69	7.69	15.38
태광	10	-	-	-	-	-	-	-	-	-	-	-
태영	11	-	-	-	-	-	-	-	-	-	-	-
포스코	16	1	-	-	-	-	1	1	2	6.25	6.25	12.50
하림	21	-	2	-	-	-	2	-	2	9.52	-	9.52
하이트진로	6	4	-	-	-	-	4	-	4	66.67	-	66.67
한국금융지주	6	-	-	-	-	-	-	1	1	-	16.67	16.67
한국타이어	9	1	-	-	-	-	1	1	2	11.11	11.11	22.22
한라	11	-	-	-	-	-	-	2	2	-	18.18	18.18
한진	25	-	6	1	-	-	7	1	8	28.00	4.00	32.00
한화	26	-	2	2	-	1	5	1	6	19.23	3.85	23.08
현대백화점	24	-	2	-	-	-	2	-	2	8.33	-	8.33
현대자동차	50	-	8	-	-	-	8	2	10	16.00	4.00	20.00
현대중공업	16	-	3	-	-	-	3	1	4	18.75	6.25	25.00
호반건설	1	-	-	-	-	-	-	1	1	-	100.00	100.00
효성	27	-	1	1	-	1	3	2	5	11.11	7.41	18.52
총합계	889	45	57	10	5	10	127	43	170	14.29	4.84	19.12

<부표3> 2019년 기업집단별 이해관계 있는 감사 현황

기업집단	총합계	이해관계 있는 이사 수								직접이해 (B/A)	학연 (C/A)	이해관계 (D/A)
		직접이해관계(B)						학연(C)	총계 (D)			
		계열사	소송 대리	전략적 제휴	정부채 권단	기타	소계					
SM	2	-	-	-	-	-	-	-	-	-	-	-
넥슨	1	-	-	-	-	-	-	-	-	-	-	-
다우키움	6	-	-	-	-	-	-	-	-	-	-	-
대림	2	-	-	-	1	-	1	-	1	50.00	-	50.00
동원	6	3	-	-	-	-	3	-	3	50.00	-	50.00
미래에셋	1	1	-	-	-	-	1	-	1	100.00	-	100.00
삼성	4	1	-	1	-	-	2	-	2	50.00	-	50.00
세아	5	1	-	-	-	-	1	-	1	20.00	-	20.00
셀트리온	1	-	-	-	-	-	-	-	-	-	-	-
씨제이	2	-	-	-	-	-	-	-	-	-	-	-
애경	1	-	-	-	-	-	-	-	-	-	-	-
에스케이	7	4	-	1	-	-	5	-	5	71.43	-	71.43
에이치디씨	2	1	-	-	-	-	1	-	1	50.00	-	50.00
엘지	1	1	-	-	-	-	1	-	1	100.00	-	100.00
영풍	6	3	-	-	-	-	3	-	3	50.00	-	50.00
오씨아이	4	1	-	-	-	-	1	1	2	25.00	25.00	50.00
유진	1	-	-	-	-	-	-	-	-	-	-	-
이랜드	1	-	1	-	-	-	1	-	1	100.00	-	100.00
지에스	1	1	-	-	-	-	1	-	1	100.00	-	100.00
케이씨씨	2	-	-	-	-	-	-	-	-	-	-	-
코오롱	4	-	-	-	-	-	-	-	-	-	-	-
태영	1	1	-	-	-	-	1	-	1	100.00	-	100.00
포스코	4	4	-	-	-	-	4	-	4	100.00	-	100.00
한진	1	-	-	-	-	-	-	-	-	-	-	-
한화	1	-	-	-	-	-	-	-	-	-	-	-
호반건설	1	-	-	-	-	-	-	-	-	-	-	-
효성	5	1	-	-	-	1	2	1	3	40.00	20.00	60.00
총합계	73	23	1	2	1	1	28	2	30	38.36	2.74	41.10



<부표4> 2020년 기업집단별 이해관계 있는 감사 현황

기업집단	총합계	이해관계있는이사수								직접이해 (B/A)	학연 (C/A)	이해관계 (D/A)
		직접이해관계(B)						학연(C)	총계 (D)			
		계열사	소송대리	전략적 제휴	정부채권단	기타	소계					
SM	2	-	-	-	-	-	-	-	-	-	-	-
넥슨	1	-	-	-	-	-	-	-	-	-	-	-
다우키움	6	1	-	-	-	-	1	-	1	16.67	-	16.67
대림	2	-	-	-	2	-	2	-	2	100.00	-	100.00
동원	6	4	-	-	-	-	4	-	4	66.67	-	66.67
미래에셋	1	1	-	-	-	-	1	-	1	100.00	-	100.00
삼성	4	1	-	-	-	-	1	-	1	25.00	-	25.00
삼양	2	2	-	-	-	-	2	-	2	100.00	-	100.00
세아	5	1	-	-	-	-	1	-	1	20.00	-	20.00
셀트리온	1	-	-	-	-	-	-	-	-	-	-	-
씨제이	2	-	-	-	-	-	-	-	-	-	-	-
애경	1	-	-	-	-	-	-	-	-	-	-	-
에스케이	7	3	-	1	-	-	4	-	4	57.14	-	57.14
에이치디씨	2	1	-	-	-	-	1	-	1	50.00	-	50.00
엘지	1	1	-	-	-	-	1	-	1	100.00	-	100.00
영풍	6	3	-	-	-	-	3	-	3	50.00	-	50.00
오씨아이	4	1	-	-	-	-	1	1	2	25.00	25.00	50.00
유진	1	-	-	-	-	-	-	-	-	-	-	-
이랜드	1	-	1	-	-	-	1	-	1	100.00	-	100.00
케이씨씨	2	-	-	-	-	-	-	-	-	-	-	-
케이지	4	1	-	-	-	-	1	-	1	25.00	-	25.00
코오롱	4	-	-	-	-	-	-	-	-	-	-	-
태영	1	1	-	-	-	-	1	-	1	100.00	-	100.00
포스코	4	4	-	-	-	-	4	-	4	100.00	-	100.00
한진	1	-	-	-	-	-	-	-	-	-	-	-
호반건설	1	-	-	-	-	-	-	-	-	-	-	-
효성	5	1	-	-	-	1	2	1	3	40.00	20.00	60.00
총합계	77	26	1	1	2	1	31	2	33	40.26	2.60	42.86